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1. 계속비공사의 예산집행방법 등

<질 의>

계속비 공사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보다 1년 앞당겨 준공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준공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물 인수 가능여부 및 실적인정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속비공사에 있어 1년 앞당겨 완공하고 이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처리해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당초공사계약 기간을 1년이상 앞당겨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채무부담행위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대가지급 여부와 관련 없이 시설물 인수 및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임

2. 각자대표 입찰유·무효

<질 의>

A 법인의 각자대표 중 1인(갑)이 B 법인의 단독대표인 경우 A 법인의 다른 각자대표(을)와 B 법인의 대표(갑)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됨. 다만, 각자대표의 경우는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인 대표권도 각자 행사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B법인의 대표인 ‘갑’ 이 A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나, A법인은 다른 각자대표인 ‘을’ 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동일인이 2통 이상 제출한 입찰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자대표의 경우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의 경우)의 적정 여부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음.

3.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시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및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이 있으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가 있으나,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시공상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의무가 있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相計)처리 해야 하며 상계처리가 곤란한 경우라도 연대보증 시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증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시공 의무는 있는 것임

4.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당초 계획 수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중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의 특정인에 당초 계획 수립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등이 소속된 특정 학술기관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4-⑥ 규정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이 경우 ‘특정인’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당해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특정인’ 으로 보는 것임

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 의>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 전체 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차수별로 계약기간을 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별도 연장절차 없이 전체 계약기간 대비 계약기간이 증가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 195호) 제31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중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진행 불가능,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착공지연 및 시공중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기한내 계약이행 불가,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정공정표를 첨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하고 승인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동 예규 제5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사유, 공사중지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할 사항임

6. 적격심사 결격여부평가 등

<질 의>

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시 일반건설공사가 아닐 경우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실적 인정 여부 및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요구 가능 여부



② 지역제한 입찰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의 기준 서류

〈회 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6> 3-주2)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바, 일반건설공사가 아닐 경우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 할 수 없음
- 또한, 동 예규 <별표1> I-2-가, 다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증명 관련 서류에 있어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II 규정에 의거 주된 영업소재지로 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기준임

7. 공고서 오류시 입찰집행방법

〈질 의〉

전문공사 입찰에 있어 실제 적용할 적격심사 기준과 상이하게 공고되고 잘못된 공고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개찰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제2조 규정에 의거 적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가 잘못된 경우라도 명백한 오류에 해당된다면 동 예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 내역입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내역입찰에 있어 물량내역서의 단위규격과 단가산출서의 단위규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 195호)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 내역입찰에 있어 단순히 물량내역서와 단가산출서만 다른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와 도면, 시방서등의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임

9. 기술용역 지체상금부과 방법

<질 의>

① 시립박물관 건축설계경기(사업비 195억원 - 건축65, 전시130) 당선자와 2005. 12. 9. 기본설계용역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 설계용역 수행중 전기기계설비 교체요인이 발생하여 2006. 4. 5.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4. 21. 설계금액을 28억원 증액시켜 납품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5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4. 28.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6. 15. 성과품을 납품한 경우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4. 28. 발주청 보완지시에 대하여 5. 11. 계약상대자가 사업비 증액요구를 하여 5. 15. 증액불가를 통보하고, 5. 16. 계약상대자가 시장면담을 하여 기계설비 교체는 발주청 사정이니 사업비 증액 또는 기계설비를 내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결과 6. 9. 변경불가를 통보한 바, 계약상대자가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발주청의 회신을 기다리다가 6. 15. 보완 납품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해당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간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 ②에 대하여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및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감소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 사업비 증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10.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질 의〉

물품구매에 있어 정품 대신 재생품을 납품한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3호 나목 규정에서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3호 나목 규정에 의

거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경우의 의미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요구한 규격보다 낮은 규격을 납품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요구한 규격(정품)이 보다 낮은 규격(재생품)을 납품한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것임

11. 원가계산에 반영된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질 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서에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의 정산 가능 여부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지급시 전액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 4-3-6-(10)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이나 계약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동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이전 예정가격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정산할 수 없을 것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2. 입찰공고 취소 후 재공고입찰 가능여부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여 그 결과 3개사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진행 전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 공고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 제196호)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바,
- 질의사항의 경우는 입찰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재공고입찰은 할 수 없을 것임

13.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여 그 결과 2개사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공고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고, 이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및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 제196호)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 질의사항의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서 1인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14. 채권압류와 소멸시효 등

<질 의>

- ①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탁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공탁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 ② 채권가압류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이자,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 처리 방법
- ③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채권소멸시효

<회 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탁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공탁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고문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 ②에 대하여

-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규정에 의거 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추후 청구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의 ③에 대하여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하고 있음

15.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변경금액 산정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 KS규격의 개정으로 인한 규격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을 변경된 자재에 대하여만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노무비 및 경비 등에 대하여도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 질의사항의 경우는 변경된 자재에 대하여 산정단가에 대하여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노무비 및 경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자재변경에 따른 노무량 등의 증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16. 부정당제재 및 하자보증금 직접사용

<질 의>

회사정리법에 의거 파산선고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사대가에서 공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인 미지급 공사대금을 하자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39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하며,
-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사대가에서 공제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직접 사용이 가능할 것임

17. 골재원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국가계약법 적용시점에 시행한 공사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육상에서 도서(섬)로 변경되었을 경우 운반거리 및 골재 단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 질의의 경우 당초 골재단가 및 운반거리 전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18. 공동도급 위반시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질 의>

국가계약법 적용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당해 발주청에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각 구성원간 별도의 ‘공동도급 운영협정서’ 를 작성, 원가율 약정을 통하여 실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비율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사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가 별도의 ‘공동도급 운영협정서’ 를 작성, 원가율을 별도로 약정하여 구성원은 실제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사가 구성원간의 공동도급 운영 협정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면 舊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19. 등기처리기간중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질 의>

흡수합병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완료일까지 2~3일 소요되는데 흡수된 회사가 그 기간동안 입찰 참여한 경우 입찰 유·무효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은 입찰일(투찰일) 전일 기준이며,

동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 완료일까지의 소요일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동 법인이 투찰하고자하는 날 전일을 기준으로 등기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업자 명의로 투찰하는 것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20. 법원의 압류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방법

〈질 의〉

① 공사 도급업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공사 도급업체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고, 법원의 전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 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② 공사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이 체납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채무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제3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공탁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문번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 체납세금여부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은 별개의 문제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없는 한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는 없음



21. 감리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기 시행중인 ○○교 전면책임감리용역과 발주예정인 △△공사 감리용역을 사업의 시급성,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제16조 규정에 의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바,
- 질의하신 사항은 전혀 별개의 용역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어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2.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병대 사령부간 전공선양비 이설협약에 따라 해병대 사령부가 자체 공모한 공모결과를 인정하여 공모에서 당선된 작가와 전공선양비 설치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차목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바,
-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공모가 관련 법령에 의한 디자인 공모가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공모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모결과가 인정되더라도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는 설계용역에 대하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찰절차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임

23.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BT(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추진중인 ○○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경우 당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다른 공사(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와 같은 부지 내로서 작업상 혼잡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업시행자인지 또는 시공자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② 규정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가능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선투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하나 결과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소유권이 당해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상기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이어야 함



24.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착오적용시 낙찰자 결정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을 86.745%로 적용하여야 하나 시스템 조작 실수로 87.745%로 적용하여 개찰한 경우 처리방법

<회 신>

- 질의하신 사항은 입찰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기준을 적용한 수기계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25. 대가지급 후 추가금액 지급 가능여부

<질 의>

공사 및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공사는 공사계약 이행중 설계변경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와 감리용역은 공사의 지체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용역이 완료되어 준공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상기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근거로 추가로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 195호) 제2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용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이 당해 공사 또는 용역의 완료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사유에 해당되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검사 완료 후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6. 물품구매입찰 경영상태 평가방법

<질 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의 평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5호) 규정에 의거 2006. 7. 1. 이후 입찰 공고하는 물품구매·제조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야만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임

27. 기술용역의 분담이행 참여비율 산정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적격심사에 있어 적용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바, 질의하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 방법은 발주대상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분담한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28.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및 불법하도급 처리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준설공사 입찰공고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하수관로 흡입 준설차량의 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차량 미보유업체의 낙찰로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이 관련 법령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장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특정장비의 보유상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정상적인 입찰참가자격으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하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